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할 부 거 래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
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총리 (공정거래위원회 소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의결주문

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여행상품, 가정의례상품을 선불식 할부계약 해당재화로 추가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의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, 그 밖에 할부수수료의 실제 연간요율 최고한도를 조정하고 타법상 용어변경을 반영하는 등 법령상 미비점을 해소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용어의 변경(안 제2조)

- 1) 개정된 양식산업발전법의 시행에 따라 어업과 양식업이 분리됨(시행 이전에는 어업이 양식업을 포괄)
- 2) 이에 따라 제2조 제3호의 ‘어업’을 ‘어업(양식업을 포함한다)’으로 변경하려는 것임

나. 선불식 할부계약 해당재화 추가(안 제2조의2 신설)

- 1) 현재 일부 상조업체(자회사 포함)가 크루즈 여행상품, 가정의례 상품 등을 함께 판매하고 있으나, 현행 규정상 해당 상품의 판매에 대해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, 선수금 예치 등 할부거래법 상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음
- 2) 이에 따라 여행상품, 가정의례상품을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

재화로 추가하여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

다.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최고한도 조정(안 제5조)

- 1) 할부거래법 제7조는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의 최고한도를 「이자제한법」에서 정한 이자의 최고한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
- 2) 「이자제한법」 시행령 개정으로 이자의 최고한도가 연 20%로 인하된 바,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최고한도도 이에 맞추어 연 20%로 조정하려는 것임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1. 7. 14. ~ 8. 23.) 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규제 1건

- 규제 신설(선불식 할부계약 해당재화 추가)

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 중 “어업활동”을 “어업(양식업을 포함한다)활동”으로 한다.

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의2(선불식 할부계약의 범위) 법 제2조제2호나목에서 “가목에 준하는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재화등으로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등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등을 말한다.

1. 여행을 위한 용역(제공시기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) 및 이에 부수한 재화
2. 「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가정의례(장례·혼례는 제외한다)를 위한 용역(제공시기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) 및 이에 부수한 재화

제5조제2항 중 “연 100분의 25로”를 “연 100분의 20으로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이후
법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재화등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선불식
할부거래업자는 이 영 공포일부터 1년 이내에 법 제18조에 따라 등록
하여야 한다.

제3조(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대한 적용례) ① 제2조의2의 신설규
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선불식 할부계약부터 적용한다.

② 이 영 시행 이후 제2조의2에 따른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해 선불식 할
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의하여 보전하여야 할 금
액은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율로 한다.

1. 이 영 공포일로부터 1년까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
의 20
2. 이 영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까지는 대통령령으로
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40
3. 이 영 공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3년까지는 대통령령으로
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60
4. 이 영 공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4년까지는 대통령령으로
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80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소비자의 범위) 「할부거래 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“이라 한다) 제2조제5호나목에서 “사 실상 가목의 자와 동일한 지위 및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를 말한다.	제2조(소비자의 범위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· 2. (생 략)	1. · 2. (현행과 같음)
3. 재화등을 농업(축산업을 포 함한다) 및 <u>어업활동을</u> 위하 여 구입한 자로서 「원양산업 발전법」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 은 원양어업자 외의 자	3. ----- ----- <u>어업(양식업을 포</u> <u>함한다)활동</u> ----- ----- -----
<신 설>	<u>제2조의2(선불식 할부계약의 범</u> <u>위) 법 제2조제2호나목에서 “가</u> <u>목에 준하는 소비자피해가 발생</u> <u>하는 재화등으로서 소비자의 피</u> <u>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</u> <u>으로 정하는 재화등”이란 다음</u> <u>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</u> <u>재화등을 말한다.</u>
	1. 여행을 위한 용역(제공시기

제5조(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계산방법 등) ① (생략) ② 제1항에 따른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의 최고한도는 <u>연 100분의 25</u>로 한다.	<u>가</u>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) <u>및 이에</u> 부수한 재화 2. 「<u>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</u>」 제2조에 따른 가정의례(장례·혼례는 제외한다)를 위한 용역(제공 시기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) 및 <u>이에</u> 부수한 재화 제5조(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계산방법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<u>연 100분의 20</u>으로---
--	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	
연 락 처	(044) 200 - 4829